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5
----------	------

제출년월일 : 2024년 2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종료('23. 8. 31.)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기능,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지도·점검 등 규정 삭제(안 제21조~제24조)
- 나. 문구 등 수정(안 제10조,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11. 9.~11. 29.)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이소민(☎2133-5034)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부위원장)”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 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u>때에는 부위</u> <u>원장</u> ----- ----- ----- <u>때에는</u> ----- -----.
제13조(위원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 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 위 안에서</u>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 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수당) ----- ----- <u>범</u> <u>위</u> ----- ----- -----.
제21조(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u>예방센터 설치</u>) 시장은 성희롱· <u>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u> <u>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희</u> <u>롱·성폭력 보호 시스템의 사각</u> <u>지대에 있는 시민 보호를 위한 예</u> <u>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울 직</u> <u>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이</u> <u>하 “센터”라 한다)</u> 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센터 기능) 센터의 주요기능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규모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
5. 성희롱·성폭력에 관해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센터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설치 근거 규정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수반되는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이소민(2133-5034)